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148
-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 외 12명
- 발 의 일 : 2016년 4월 21일
- 회 부 일 : 2016년 4월 22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 연임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2016. 4. 28. ~ 5. 9)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위촉 최소화 및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위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¹⁾에 따라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²⁾에는 자문위원을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를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위원회의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를 규정(안 제2조 신설)

- 안 제2조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의하고 (제2호),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규정하려는 것(제3호)으로, 업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1)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동일위원의 위원회 3개 초과 제한 및 동일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 제한(안 제8조제3항 신설)

- 안 제8조제3항은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동일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시의원, 한정된 특수전문분야 위원,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서울시에서는 152개 위원회(2016년 5월 기준)를 운영 중이며, 위촉직 위원은 3,171명(2015년 말 기준)이고 전년도 대비 31명이 증가하였음.

〈연도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 4월
위원회수	116	113	103	127	136	148	152	152
증 감	△6	△3	△10	24	9	12	4	-

〈위원회 구성〉

(단위 : 명)

연도	총 계	당연·임명직	위 촉 직								위 촉 직	
			소 계	학 계	전문가	민 간 기업체	시민 사회단체	시의원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기 타 (일반시민 등)	여성	장애인
'15말	3,633	462	3,171	865	682	308	369	184	284	479	1,191	47
			(100%)	(27.3%)	(21.5%)	(9.7%)	(11.6%)	(5.8%)	(9.0%)	(15.1%)	(37.6%)	(1.5%)
'14말	3,281	427	2,854	804	570	414	295	158	157	456	1,074	39
			(100%)	(28.2%)	(20%)	(14.5%)	(10.3%)	(5.5%)	(5.5%)	(16.0%)	(37.6%)	(1.4%)

- 동일위원의 2개 이상 위원회 참여 위원은 372명으로, 전년도 대비 54명이 증가하였으며, 4개 이상 위원회 참여 위원은 19명으로, 전년도(36명) 대비 17명 감소하였으나, 동일위원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여전히 위촉되고 있는 상황임.

〈위촉직 중 2개 이상 위원회 참여 현황〉

(단위 : 명)

연도 \ 중복수	계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2015년	372	248	105	12	5	2
2014년	318	228	54	20	11	5
증 감	55	20	51	△7	△6	△3

- 동일위원의 장기 연임 현황을 살펴보면, 6년을 초과하여 장기연임하는 위원은 118명(위촉직 3,171명 중 3.7%)이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 연임 하는 위원은 44명(1.4%)이고, 20년 이상 장기 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임 현황〉

(단위 : 명)

연도 \ 연 임	계	6년 초과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2016년 5월	118	74	35	8	1
2014년	151	105	40	5	1
증 감	△18	△19	△4	5	0

- 안 제8조제3항에 대해 동일위원의 장기 재직과 동일위원의 다중 위원회 위촉을 제한할 경우 더 많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서울시 행정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구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안 제8조2 신설).

- 안 제8조의2는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특히 제8조의2 제3호와 제4호의 해촉사유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위원의 해촉 사유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며, 동 사유로 해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재위촉도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촉시 위촉위원의 소명 기회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는 등의 안전장치 또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라. 경과규정의 필요성 여부

- 개정안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우 현재 조례 개정 직후 해촉되어야 하는 위원은 총 123명 수준임(3개 초과 위촉위원 5명, 6년 초과 연임위원 118명, 2016.5월 기준).
-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에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각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되어 있는 위촉위원의 강제 해촉 문제 및 각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경과규정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중복위촉·연임 관련 타 지자체 현황(참고자료 참조)

개정안	수정안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자료

중복위촉·연임 관련 타 지자체 현황

구 분	중복위촉 (최대)	연임	단서 규정 (중복위촉·장기연임 제한 예외)			경과조치 규정 (부 칙)
			특수전문 분야 위원	비상설 위원회	광역의원	
부 산 광 역 시	3개	-	○	○	○	중복위촉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 적용
대 구 광 역 시	3개	1회	○			미규정
광 주 광 역 시	3개	1회	○	○	○	중복위촉·장기연임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대 전 광 역 시	3개	3회	○	○		중복위촉·장기연임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경 기 도	3개	3회	○	○		미규정
강 원 도	4개	3회	○	○		미규정
충 청 남 도	3개	3회	○	○		미규정
전 라 북 도	3개	1회	○	○		미규정
전 라 남 도	3개	1회	○	○	○	중복위촉·장기연임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경 상 남 도	4개	3회	○	○		중복위촉·장기연임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 규정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3개	2회				중복위촉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 적용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촉위원 임기는 3년 이내